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이 윤 정*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를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 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혐오 정서, 범죄현장, 성 소수자, 법적 의사결정, 동정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0015).

† 교신저자 : 이윤정,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혜화관 240호), 현재 소속 없음. E-mail : crushon1211@gmail.com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 19 시국을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체를 전파하거나 전파할 위험이 있는 집단을 향한 혐오 표출이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내집단 편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사회에 폐해를 주는 요인에 대해 혐오 반응을 취하게 만들었다(Navarrete & Fessler, 2006). 한국 사회에서도 밀접 접촉자 동선 확인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특정 개인에 대한 도 넘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동성에 전용 바가 코로나 19의 진원지라는 것이 알려지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그 한 예이다(BBC 코리아, 2020. 05. 26). 특히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상반기에는 외국인과 성 소수자와 관련된 SNS의 70% 이상이 부정적인 혐오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WTO(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가 간, 지역 간, 집단 간 혐오 표출의 우려를 표하였으나, 팬데믹은 특정 집단, 특히 아시아인이나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사회적으로 용인해 표출 시킨 계기가 되어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혐오 정서 출처와 속성

일반적으로 혐오 정서는 신체 또는 정신의 순수성 위반에 대한 직관적 반응으로(Horberg et al., 2009) 크게 핵심적 혐오¹⁾(physical disgust)와 도덕적인 혐오(moral disgust)로 나누어진다. 핵심적 혐오는 악취, 세균, 인체 분비물, 상한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진화론적으로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천적인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도덕적인 혐오는 타인의 행동이나 특질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Lee & Ellsworth, 2013). 이는 인간의 정신(soul)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Chapman & Anderson, 2013; Curtis & Biran, 2001; Haidt et al., 1997).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혐오 정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법적 판단 시 나타날 수 있는 혐오 정서는 피고인의 성향이나 소속 집단과 같은 특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또는 잔인한 범행 방법을 보여주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는 낯선 외부 집단이 자신의 집단에 끼칠 신체적 위해나 도덕적 위해에 대한 방어로서 나타난다(Cottrell & Neuberg, 2005). 소수 집단은 낯선 존재로서(ex. 낯선 병원체) 공동체 전반의 건강에 위협을 미칠 수 있거나 공동체가 지향해온 가치관에 반하여 사회적 규범을 해친다고 인식될 수 있다. 한편,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는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고정관념 내용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 Fiske et al., 2002; 이하 SCM)에 의하면 고정관념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타인과 처음 상호작용하는 경우 두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타인 의도의 온정성(warmth), 다른 하나의 기준은 타인의 능력(competency)이다.²⁾ 이런 두 기준에 의해

1) 인간의 진화적 발달에서 유래하는 혐오라는 점에서 'physical disgust'는 'core disgust'로도 불리고 있다(Horberg et al., 2009). 이하에서 번역은 '핵심적 혐오'로 한다.

네 개의 군집이 형성되는데, 바로 온정적이고 능력 있는, 온정적이지만 무능한, 차갑지만 능력 있는, 그리고 차갑고 무능한 집단이다. SCM은 각 집단으로부터 특정의 정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혐오나 경멸, 시기나 질투, 동정심과 배려, 존경과 같은 다양한 정서들을 포함한다(Fiske, 2018).

위 SCM에서 낮은 온정성과 낮은 능력 조합에 속하는 대표적인 집단군은 노숙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성 소수자가 있으며, 이 집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혐오와 경멸이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장 부정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Herek & McLemore, 2013; Yang, 1997), 이러한 편견은 그 중심에 혐오를 포함하고 있다(Herek & Capitanio, 1999). 최근에는 종교, 성별 또는 인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은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으나,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Herek & McLemore, 2013).

한편,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현장을 접할 때도 혐오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Bright & Goodman-Delahunty, 2006). 범죄현장에서의 피, 찌은 육체나 그 냄새 등은 핵심적 혐오와 관련이 되어있으며 또한, 이 현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도덕적 혐오도 포함하고 있다. 도덕적 혐오는 타인의 존엄성을 박탈할 때 나타나는데, 범죄현장의 잔인한 묘사는 피해자의 존엄성이 훼손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로부터 혐오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Rozin et al., 1999).

혐오 정서와 법적 판단

이러한 혐오는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정서가 사회적 판단과 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특히 법적 맥락에서 관련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정서는 도덕적 판단과 연관성이 높은 분노, 두려움, 혐오로 알려져 있다. 배심원들은 특히 피고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의 참혹함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범죄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의 성질이나 특질이 도덕적 가치(moral value)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될 때에는 혐오를 느낀다(Estrada-Reynolds et al., 2016).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분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혐오 정서가 분노 정서보다 법적 판단에 오히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alerno & Peter-Hagene, 2013). Salerno와 Peter-Hagene은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혐오감을 느낄 때 분노 정서도 상승하였으나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혐오감 없이 분노 자체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끔찍한 사진에 노출된 배심원들은 그렇지 않은 배심원들에 비해 더 큰 혐오 정서를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 경향이 높거나 증거들을 유죄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ight & Goodman-Delahunty, 2006; Douglas et al., 1997). 또한, 이러한 경향은 사

2) Fiske et al.(2002)에 따르면, 온정성(warmth)은 선의(well-intended), 따뜻한 인성(warm), 선한 본성(good natured), 진실성(sincere)으로 정의되었으며, 능력(competence)은 자신감(confident), 경제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t), 경쟁력(competent), 높은 지식수준(intelligent)으로 정의되었다.

진이나 영상 형태로 잔인한 증거가 제시되든 아니면 구두/서면 형식으로 제시되든 상관없이 나타났다(Bright & Goodman-Delahunty, 2004).

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유형

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느낀 일시적 정서(incidental emotion)와 사건의 성질 혹은 대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얻어진 사건 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정서는 특히 판단자에게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의 출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한 경우 나타나는 판단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사건과 무관한 일시적인 정서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Hastie, 2001). 배심원들에게 이와 같은 정서의 영향을 무시하라는 지시문(judicial instruction)을 제시하는 경우 배심원들은 이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Feigenson & Park 2006). 다시 말해 일시적 정서(incidental emotion)를 느낀 사람들에게 사건과 무관한 정서가 판단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지시를 줄 때 판단자들은 곧 그 비합리성을 깨닫고 자신의 정서가 판단에 개입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만, 자신이 느낀 정서가 정당한 원천, 예를 들어 범행 방법의 잔인함(범행 현장의 끔찍함)과 같이 사건 그 자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이는 사건 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서 자신의 감정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Loewenstein & Lerner, 2003).

그러나 한편, 사건에서 나온 정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사건의

특질인 피고인의 특성으로부터 정서 반응이 나왔다면, 이를 일시적 정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사건 관련 정서로 분류해야 하는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성별, 종교,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 언론에 보도된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관련된 정보라는 점에서 판단자, 특히 배심원들이 볼 때 사건 관련 정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자체와는 무관한 재판 외적인 증거(extra-legal evidence)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속한 집단이 소수 집단일 때, 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가 판단자들에 의해 어떻게 인지되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정서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Feigenson과 Park(2006)는 일시적 정서와 사건 관련 정서가 법적 판단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판단자의 정서는 현재 환경/상황을 인지하는 시그널로서 기능한다는 정서의 정보 제공적 역할을 설명하며 이를 크게 정보로서의 정서(affect-as-information)와 평가 경향(appraisal tendency)으로 나눈 바 있다.

정보로서의 정서(affect-as-information)는 직접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사건의 중대함에서 비롯되어 배심원들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Bornstein, 1998), 충격적인 부검 사진에 노출된 배심원들이 분노를 느끼고 이런 분노가 바로 유무죄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Douglas et al., 1997)그 대표적인 예이다. 평가 경향(appraisal tendency)으로서의 정서는 사건 특성

에 관한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한다(Semmler & Brewer, 2002). 구체적으로, 평가 경향으로서의 정서는 사건의 특질에서 특정 정서가 유발되고, 이 정서가 다시 사건의 다른 정보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건의 특질에서 나온 정서는 사건의 다른 정보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법적 책임에 관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

Keltner와 동료들(1993)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애매한 경우라도(책임 정도를 높음, 애매함, 낮음으로 구분함) 분노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통제조건 참가자들보다 가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해자 책임이 애매한 경우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은 분노 정서를 경험한 참가자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귀책 정도에 비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라는 정서는 결과를 상황이 아니라 대상에 귀인하여 그 대상을 비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Ortony et al., 1988), 분노를 느낀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귀책 정도를 무시하고 그 대상에 대한 처벌 경향을 나타냈지만, 통제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사건의 다른 특질인 피해자의 귀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분노와 마찬가지로 혐오 정서도 판단자들이 판단 대상에 대해 비난하게 만들고 그 대상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려는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Goldberg et al., 1999; Ortony et al., 1988)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서가 사건의 다른 정보를 거쳐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도 있는데, 사건 피해의 엄중함으로 분노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상황이 아니라 행위자의 기질적 요소의 역할을 더 두드러지게 평가하므로 손해의 인과관계 판단에 행위자의 과실을 더 크게 평가하게 되고, 이로써 가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Keltner et al., 1993). 이는 Ask와 Pina(201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분노가 유발된 참가자들은 슬픔을 느낀 참가자들보다 횡령죄 피고인의 의도(intention)를 더 고의적인 방향으로 평가하여 더 강한 처벌을 결정하였다. 즉, 판단자의 분노라는 정서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최종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서는 확실성(certainty)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Tiedens & Linton, 2001) 슬픔과 두려움 정서와는 달리 분노와 혐오는 확실성이라는 요소와 연합되어 있다(Smith & Ellsworth, 1985). 확실성이 내재된 정서들은 판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더 이상의 정보수집 필요성을 부정하게 만든다. 즉, 이중처리 이론(Dual system theory; Wason & Evans, 1974)의 직관적인 시스템 1적 정보처리 과정을 작동시킴으로써 정보에 의한 숙고적인 판단이 아닌 자동적인 판단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Bodenhausen et al., 1994).

특정 사건에서 정서가 법적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의 다른 정보의 수준(ex. 피해자의 귀책 정도)을 차별화하고 특정 정서가 유발된 조건에서 이 정보의 수준에 대응하여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판단자가 사건 정보의 다른 특질에 비례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평가적 경향, 즉, 간접적 경로를 취한

것이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보로서의 정서적 영향, 즉, 직접적 경로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잔인한 범죄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정서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됐으나,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며 내재하여 있던 성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법적 맥락에서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 범죄현장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의 영향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혐오라는 정서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분노 정서와 대등하거나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출처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혐오 정서의 영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소수 집단 소속인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이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수 민족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집적되어왔다(Sommers, 2006). 그러나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때 판단자들의 법적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나오는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혐오 정서가 법적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되, 특히 전형적인 혐오의 출처로 연구된 잔인한 범죄현장과 혐오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소수 집단 정체성이라는 두 유형의 출처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혐오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두 유형의 출처는 특히 혐오 정서의 속성과 관련하여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 즉, 잔인한 범죄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정서는 범행 현장에서의 피나 썩은 사체 등이 촉발하는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가 관련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피고인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지도 모른다는 도덕적 혐오(moral disgust)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외집단,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는 낯선 외집단이 전파할 수도 있는 병원체(pathogen)의 신체적 위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 소수자라는 외집단이 내집단의 성적(sexual) 사회 규범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에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다는 이중의 도덕적 위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정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를 촉발하는 요인에 따른 혐오 정서의 정도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 사건에서 혐오의 원인을 잔인한 범죄현장의 묘사가 제시된 조건,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조건, 그리고 통제조건으로 나누었다. 앞서 본 것처럼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의 유형 중에서도 냉담한 정서와 무능력함에 속하므로, 이로부터 유발되는 혐오 정서는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소수자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는 범죄행위로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다는 도덕적 규범 이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 즉 성적 행동 가치(sexual-moral norm)에 반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범죄현장에서 유발된 혐오보다 더 클 것이다.

한편, 엄중한 범죄 사건 판단에 부적절한 정서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 법적 판단은 그 대상인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

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증거 외에 다른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법적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 지시문이 제시되는 예도 있다. 그러나 판단자들이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사건과 관련이 있고(integral emotion), 따라서 부적절한 정서의 개입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때는 사법적 지시문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각 출처에서 나온 혐오 정서를 판단자들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만약 판단자들이 범죄사실 자체와 무관한 사건의 특징에서 나온 정서를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시된 지시문을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시문 자체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 사건에서 부적절한 정서가 개입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현장의 잔인함으로 인한 혐오 정서와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혐오 정서가 사건과 관련된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일시적인 정서(incidental emotion)로 인식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정서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사건 관련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의 영향이 지시문이나 경고로써 교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Feigenson & Park, 2006; Schwarz & Clore, 1983).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혐오 정서의 출처에 따라 혐오 정서의 속성이 다르게 인식되는지 보기 위해 지시문을 제시한 조건과 지시문이 제시되지 않은 조건으로 나누어 지시문 처치가 증거판단이나 유무죄 확률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에 따라 혐오 정서의 속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현장으로 인해 혐오가 가중된 경우에는 범죄현장은 범죄 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혐오 정서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며(integral emotion), 이로 인해 부적절한 정서의 영향과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한 지시문(judicial instruction)의 제시가 증거판단이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반면,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혐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성적 지향성과 큰 관계가 없는 한, 이 혐오 정서가 적어도 사건에서 직접 비롯되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법적 지시문은 범죄현장 조건에서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한편,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혹은 사건의 다른 특성, 특히 사건 증거에 관한 판단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 판단은 제시된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307조 1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만약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는 현행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또한 침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혐오 출처에 따라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무죄 증거가 제시된 경우 이러한 무죄 증

3)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거에 대한 고려 정도가 혐오 정서의 출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혐오 정서의 출처에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증거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혐오 정서가 강해지면 혐오 정서의 확실성(certainty) 속성으로 인해 휴리스틱 적인 자동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현장 조건과 성 소수자 조건은 통제조건과 달리 혐오 정서가 유무일 확률 판단에 미치는 경로가 직접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인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법적 판단 시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혐오 정서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급한 것처럼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다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과소보고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건의 피고인인 성 소수자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며, 이로써 성 소수자 조건에서 나타난 혐오 정서는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만, 성 소수자가 피고인인 경우 법적 판단자의 혐오 반응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가설

위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성 소수자로부터 비롯된 혐오는 범죄현장에서 유발된 혐오보다 더 클 것이다.

가설 1-1: 혐오 정서가 높은 성 소수자 조건에서 증거를 가장 유죄방향으로 해석하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며 높은 형량을 부과할 것이다.

가설 2: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통제조건에서와 성 소수자 조건에서보다 제시문의 제시가 유죄일 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약할 것이다.

가설 3: 범죄현장 조건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추가적인 무죄 증거가 유죄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조건에서보다 약할 것이다.

가설 3-1: 범죄현장 조건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통제조건에서와 달리 혐오 정서가 유죄일 확률을 곧바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4: 성 소수자 조건에서 일반적인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M 리서치 회사에 참가자 모집을 의뢰하였다. 의뢰를 받은 M 리서치 회사는 자사의 패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본 연구 참가에 동의한 패

널들을 본 연구의 참가자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600명의 20대 이상 성인들이 참가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300명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4.40(13.35)세로 20대부터 60대까지 참가자 수는 모두 각 120명이었으며, 각 20%를 차지하였다.⁴⁾

설계

본 연구는 2 x 3 x 2 참가자 간 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지시문 존부(지시문 있음 vs. 없음), 혐오 정서의 출처(통제조건 vs. 성 소수자 vs. 범죄현장), 그리고 추가 무죄 증거 존재 여부(있음 vs. 없음)로 설계하였다. 조건별 참가자 할당비율은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1).

종속 변인은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피고인에 대한 평결, 유죄로 판단한 경우 형량, 응답 당시 정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 및 증거평가로 하였다. 그리고 혐오의 출처가 성 소수자인 경우에는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은 1 '0%' - 11 '100%'로 측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판단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보통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으로 정한 최소 10년부터 징역형의 기본 상한인 30년 사이에 참가자들이 단답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⁵⁾ 현재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혐오스럽다', '화가 난다', 그리고 '두렵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1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10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 네 개의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01로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평가항목은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 (1 '전혀 혐오스럽지 않음' - 10 '매우 혐오스러운')과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1 '전혀 동정심이 안 드는' - 10 '매우 동정심이 드는')으로 측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는 성 소수자 조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평가와의 상관을 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정서는 혐오뿐만 아니라 동정심도 포함한다는 선행연구(Cottrell & Neuberg, 2005)를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질문을 추가하였다.

쟁점이 되는 증거에 관한 판단은 총 2개의 쟁점 증거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 중에도 설득력이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1 '검사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에서 10 '변호인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증거판단 평균은 위 두 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으로 하였으며, Cronbach's α 가 .712로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3개 질문을 추가하였다. 앞서 고정관념 내용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 SMC)에 따라 '일반 국민이' 성 소수자 집단의 능력(Competence)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온정성 정도(Warmth)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오 정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4) 본 조사를 리서치 회사에 의뢰할 때, 각 조건 당 성별과 연령 분포를 균일하게 요청하였다.

5) 징역형의 가중은 형법 제 42조에 의거 50년까지로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가중 사유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 참가자들이 본 사건이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 가중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형량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표 1. 조건별 참가자 할당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50	50	50	50	50	
지시문 있음	50	50	50	50	50	50	3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주. 단위 명

인식에 대해 답하게 하였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Fiske et al., 2002) 질문의 표현을 ‘귀하는’ 이 아니라 ‘일반 국민은’으로 바꾸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낮추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 쓰인 연구 재료는 혐오 정서의 출처 두 유형(성 소수자, 범죄현장) 처치를 위해 쓰인 시나리오 내용, 지시문 제시 조건에 적용한 지시문, 그리고 추가 무죄 증거 존재 조건에 적용한 추가 무죄 증거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내용의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었다. 개략적인 내용은 세입자인 피고인이 최근 6개월간 월세가 밀리고 행실이 난잡하며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었고, 이를 보다 못한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고 양자 간 고성으로 오갔던 상황에서 얼마 뒤 집주인이 살해당할 채로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이다.

범죄 시나리오는 모든 조건에서 같았으나, 혐오 정서 출처 변인 중 성 소수자 조건은 시

나리오 첫머리에 피고인이 성 소수자,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동성애 유형 중 복장 도착형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가장 높다는 선행 연구(Clausell & Fiske, 2005)와 예비연구 결과⁶⁾를 참고하여 피고인의 여장 성향을 기술하였다. 이외에 피고인이 남성과 함께 침대 위에 있는 것을 집주인이 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동성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그림 1).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침대 위에 있던 장면의 묘사는 모두 같았으나, 그 대상이 이성인지 아니면 동성인지에 대해서만 성 소수자 조건과 달랐다. 잔인한 범죄현장의 처치는 시나리오 안에 사건 현

6) 예비연구로서 남성형, 여성형, 복장 도착형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1-10)를 비교하였고, 분석 결과 도착적 성 소수자가 남성형 성 소수자나 여성형 성 소수자보다 더 강한 혐오 정서를 유발했다. 총 333명(평균 연령 44.83세, 남자 168, 여자 165)이 참여하였고, 여성형은 6.66(1.96), 남성형은 5.73(2.12), 도착형은 7.66(2.07)의 혐오 정서가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330) = 24.536, p < .001, \eta^2 = .129$). 본 연구에서는 가장 혐오 정서가 높게 나타난 복장 도착형 성 소수자 조작 처치를 사용하였다.

<p>피고인 A(38세, 남)는 동성애자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남자임이 확실하지만, 가끔 진한 화장을 하고 가죽 미니스커트 같은 여자 옷을 입고 다닌다. 방에는 A와 젊은 남성이 팬티까지 모두 벗은 채로 나란히 누워있었으며, 바닥에는 옷가지, 내의, 그리고 사용된 여러 개의 콘돔이 널브러져 있었다.</p>
<p>119대원이 사건 장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사체 썩는 냄새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집중된 자상이 있었고, 마룻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여름인 7월 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p>

그림 1. 혐오 정서의 출처 두 조건의 처치 (윗단은 성 소수자 조건, 아랫단은 범죄현장 조건)

<p>귀하는 현재 이 사건과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묻는 것으로서 귀하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귀하가 이 사건의 개요를 읽고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해도 모든 재판은 증거 만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실 때는 이러한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증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그림 2. 지시문 제시 조건에 처치된 지시문

<p>아래와 같은 증거가 추가로 수집되었음.</p> <p>1. 동 건물 세입자의 증언 -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서야 피해자의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다.</p> <p>2. CCTV 증거 : 사망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 거주 건물을 방문한 김OO - 사망추정 시간 내에 김OO가 동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주변 CCTV에 찍혔으며, 김OO도 피해자에게 빛이 있는 사람이다.</p>

그림 3. 추가 무죄 증거 조건에 제시된 추가 무죄 증거

장에 출동한 119대원의 증언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그림 1). 구체적으로는 피나 사체의 부패로 인한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안면 부위의 상해로 인한 인간 존엄성 훼손의 도덕적 혐오(moral disgust)로 잔인한 범죄현장을 조작하였다.

지시문은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니 앞으로의 문항에 답변할 때 이에 개입되지 않게 하고 증거만을 고려하여 냉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문항과 증거에 관한 판단을 묻는 문항 사이에 삽입하였다(그림 2). 지시문 존재 조건에 할당된 총 300명의 참가자는 지시문이 판단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

해 응답하였으며, 평균 6.81(도움이 안 됨 '1' - 도움이 됨 '10'), 표준편차는 1.91로 지시문의 도움을 대체로 높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 무죄 증거가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인집을 나간 후에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과 집주인에게 빗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 현장 근처에 찍힌 CCTV 증거를 제시하였다(그림 3).

연구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연구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정보(심의번호; DUIRB-202304-25)를 제시받은 후 본 연구의 취지를 읽고 연구 참가 동의서에 체크를 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음에 참가자들은 검사의 기소 의견에 포함된 사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변호인의 항변을 제시받았으며, 추가 무죄 증거 제시 조건은 추가적인 무죄 방향의 증거 2개를 읽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현재 느끼는 정서에 대한 세 개의 문항에 응답하고, 피고인에 대한 평가 2문항에 답변하였다. 그 후 지시문이 있는 조건에서는 지시문이 제시되고, 쟁점이 되는 두 개의 증거를 판단하였다. 그다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질문이 뒤따랐다.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경우 참가자들은 그 형량에 대해 단답식으로 응답했으며, 지시문이 있는 조건에서는 지시문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대해 표기하였다.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의 참가자들은 추가로 성 소수자에 대한 세 개의 질문에 응답한 후, 감사 인사와 함께 설문을 마쳤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건 시나리오를 포함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읽을 때는 1분간 다음 화면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 외 각 증거에 관한 판단은 한 문항당 15초 이상의 강제 체류 시간을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JAMOVI 2.3.28 버전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 유죄일 확률, 형량, 증거평가, 및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지시문 존부) × 3(혐오 정서의 출처) × 2(추가 무죄 증거 존부)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죄일 확률과 정서 간의 관계 및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고,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과 피고인에 대한 평가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추론 통계 검정 시 유의확률은 .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종속측정치의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표 2). 유죄일 확률은 전반적으로 높았고, 사건에 대한 혐오, 분노, 두려움 정서 반응도 높았다. 증거평가는 중간 정도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2. 본 연구 종속측정치의 분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죄일 확률	600	8.01	2.12	1, 11
형량	465	20.61	7.21	10, 30
사건에 대한 혐오 정서 반응	600	7.38	2.22	1, 10
사건에 대한 분노 정서 반응	600	7.25	2.27	1, 10
사건에 대한 혐오·분노·두려움 평균	600	6.93	1.99	1, 10
피고인에 대한 혐오	600	7.87	2.00	1, 10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600	3.10	2.08	1, 10
증거 평가 평균	600	4.38	2.11	1, 10

주. 유죄일 확률 1(0%) - 11(100%), 형량은 단위가 '년'이며, 유죄 판단을 한 응답자의 경우에만 측정하였으므로 N 수가 적음.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 1(매우 긍정적) - 10(매우 부정적). 피고인에 대한 평가 1(매우 그렇지 않음) - 10(매우 그러함), 증거평가 평균 1(검사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 10(변호인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부정적 정서

참가자들의 이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은 혐오, 분노, 두려움으로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의 평균값을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10 '매우 그렇다'). 분석 결과, 혐오 출처만이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다($F_{(2,597)} = 8.845, p < .001, \eta_p^2 = .029$). 지시문 존부나 추가 무죄증거 존부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F_{(1,598)} = 0.371, p = .542, \eta_p^2 = .001; F_{(1,598)} = 2.855, p = .092, \eta_p^2 = .005$). 이 외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혐오 출처 변인 중 통제조건의 부정적 정서 평균은 7.10(1.88), 성 소수자 조건은 6.47(2.04), 범죄현장 조건은 7.24(1.98)이었으며, 사후검정(Tukey HSD)결과 성 소수자 조건과 통제조건, 성 소수자 조건과 범죄현장 조건 간 부정적

정서 평균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성 소수자 조건에서 부정적 정서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초점인 혐오 정서에 대해 따로 분석한 결과 혐오의 출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F_{(2,597)} = 5.728, p = .003, \eta_p^2 = .019$), 출처가 성 소수자일 때 평균은 7.02(2.38), 범죄현장 조건은 7.77(2.04), 통제조건은 7.36(2.18)으로 출처가 범죄현장인 경우가 혐오 정서가 가장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성 소수자 조건이 범죄현장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혐오 정서가 낮았다(표 3). 이 결과는 성 소수자가 피고인일 때 혐오 정서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측과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외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며, 지시문 존부와 추가 무죄 증거 존부는 혐오 정서에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각 $F_{(1,598)} = 0.124, p = .725, \eta_p^2 = .000; F_{(1,598)} = 2.968, p = .085, \eta_p^2 = .005$).

표 3. 조건별 혐오 정서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7.64 (2.07)	7.44 (1.83)	7.28 (2.20)	6.46 (2.54)	6.68 (5.64)	
지시문 있음	7.22 (2.54)	7.14 (2.26)	7.54(2.36)	6.80 (2.32)	7.92 (1.93)	7.86 (2.02)	7.41 (2.26)
합계	7.43 (2.32)	7.29 (2.05)	7.41 (2.28)	6.63 (2.43)	7.77 (2.07)	7.76 (2.02)	7.38 (2.22)
	7.36 (2.18)		7.02 (2.38)		7.77 (2.04)		

주. 1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 10 ‘매우 혐오스러운’

분노 정서도 또한 혐오 출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_{(2,597)}^2 = 4.468, p = .012, \eta_p^2 = .015$). 출처가 범죄현장일 때 분노 정서가 가장 높았으며(7.47), 통제조건에서도 7.42로 범죄현장 조건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성 소수자 조건의 분노 정서가 가장 낮았다(6.86). 사후검정 결과 성 소수자 조건은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분노 정서가 더 낮았다.

혐오 정서와 분노 정서 간 상관계수는 $r = .75(p < .001)$ 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혐오 정서와 두려움 정서 간 상관은 $r = .48(p < .001)$ 로 나타났다.

유무죄 평결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세 개의 독립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시문 존부, 혐오 정서 출처, 추가 무죄 증거 존부의 3개의 예측 변인을 ‘입력’ 방법으로 동시에 회귀분석에 투입하고, 혐오 출처 변인은 3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통제조건을 기준범주로 설정

하였다. 분석 결과,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정의 유의확률은 .892로,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gelkerke R^2 값은 .042로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대략 4.2%를 보였다. 예측 변수 중 추가 무죄 증거 존부의 승산비(Odds Ratio, OR)는 0.566으로 유의하였고($p = .005$), 혐오 출처 조건 중 성 소수자 조건의 승산비(OR)도 0.626으로 역시 유의하였다($p = .048$). 이외 유의미한 예측 변인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가 무죄 증거가 존재할수록 유죄 평결 가능성이 감소하고, 혐오의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일 때는 통제조건에 비해 유죄 평결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무죄 평결이 각 조건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추가로 카이제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시문 존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chi^2_{(1)} = 1.157, p = .282$), 혐오의 출처에 따라서는 유무죄 평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_{(2)} = 7.627, p = .022$). 유죄 평결은 범죄현장 조건에서 가장 높았으며, 성 소수자 조건에서 가장 비율이 낮았다. 또한, 추가 무죄 증거 존부에 따라

표 4. 조건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평결 빈도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44/50	41/50	41/50	32/50	42/50	
지시문 있음	39/50	35/50	36/50	33/50	45/50	39/50	227/300
합계	83/100	76/100	77/100	65/100	87/100	87/100	465/600
	159/200		142/200		174/200		

주. 유죄 평결의 빈도/전체 빈도

서도 유무죄 평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chi^2_{(1)} = 8.038, p = .005$). 추가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총 300명 중 218명이 유죄 평 결을, 추가 무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300명 중 247명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표 4).

유죄확률 판단

분석 결과 혐오 정서의 출처에 따라 피고인 이 유죄일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2,597)} = 3.413, p = .034, \eta_p^2 = .011$). 혐오의 출처가 성 소수자 조건에서 유죄일 확률은 7.74(2.29)이었고,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8.28 (1.85)이었으며, 통제조건의 경우에는 8.00(2.06) 이었다. 사후검정 결과, 성 소수자 조건과 범 죄현장 조건 간에만 유의미한 유죄확률 차이 가 있었다. 또한, 추가 무죄 증거가 제시된 경 우(7.68)에는 제시되지 않은 때(8.34)에 비해 유 의미하게 유죄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_{(1,598)} = 15.318, p < .001, \eta_p^2 = .025$). 그러나 지시문 존부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_{(1,598)} = 2.702, p = .101, \eta_p^2 = .005$).

유죄일 확률에 있어 혐오 출처 변인과 추 가 무죄 증거 존부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통제조건보다 사건의 혐오 요인을 추가 처치한 성 소수자 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 혐오 정서의 확실성 속성 으로 인해 사건의 다른 정보, 여기서는 추가 무죄 증거에 대해 충분한 정보처리를 하지 않 으리라는 예측이 지지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또한, 유죄일 확률에 있어 혐오 출처 변인 과 지시문 존부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시문으로 인해 정 서의 영향이 수정되는지는 당해 정서가 일시 적인 정서인지 아니면 사건 관련 정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시 문이 제시된 경우 유죄확률값이 낮아지는 경 향이 관찰되어(표 5) 단순 효과 분석(simple effect analysis)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결과, 통제조건에서 지시문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 유죄확률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t_{(198)} = 2.393, p = .018$). 구체적으로는, 지 시문이 없는 경우(8.35)보다 지시문이 제시된

표 5. 조건별 피고인 유죄확률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8.62 (1.95)	8.08 (1.90)	8.34 (1.94)	7.28 (2.18)	8.48 (2.00)	
지시문 있음	8.08 (2.10)	7.24 (2.12)	8.00 (2.52)	7.34 (2.37)	8.54 (1.75)	8.02 (1.92)	7.87 (2.18)
합계	8.35 (2.03)	7.66 (2.05)	8.17 (2.25)	7.31 (2.26)	8.51 (1.87)	8.06 (2.03)	8.01 (2.12)
	8.00 (2.06)		7.74 (2.29)		8.28 (1.96)		

주. 피고인 유죄확률 범위는 1 (0%) 에서 11(100%). 괄호 안은 표준편차

경우(7.66) 유죄일 확률이 더 낮아졌다. 그러나 성 소수자 조건이나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지시문 존부가 유죄확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각 $t_{(198)} = 0.431, p = .667; t_{(198)} = 0.036, p = .971$).

형량

형량은 10년에서 30년의 범위에서 참가자들이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혐오 출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597)} = 3.240, p =$

.041, $\eta_p^2 = .009$).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조건의 경우 평균은 20.53(7.18), 성 소수자 조건은 19.56(7.44),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21.60(6.94)였으며, 성 소수자 조건과 범죄현장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지시문의 존부에 따라서도 형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1,598)} = 4.193, p = .040, \eta_p^2 = .014$). 지시문이 없는 조건에서 평균 형량은 21.28(7.32), 있는 조건에서는 19.92(7.04)였다. 추가 무죄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서는 형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F_{(1,598)} = 0.313, p = .576, \eta_p^2 = .001$), 이 외에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표 6. 조건별 피고인에 대한 형량 판단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21.48(7.04)	20.20 (6.76)	20.93 (7.55)	20.31 (7.61)	22.38 (7.09)	
지시문 있음	19.56 (7.14)	20.83 (8.01)	17.44 (7.42)	19.45 (6.97)	20.44 (5.96)	21.51 (6.61)	19.92 (7.04)
합계	20.58 (7.11)	20.49 (7.31)	19.30 (7.69)	19.87 (7.25)	21.38 (6.56)	21.84 (7.37)	20.61 (7.21)
	20.53 (7.18)		19.56 (7.44)		21.60 (6.94)		

주. 피고인에 대한 형량판단: 10년에서 30년 사이 (괄호 안은 표준편차)

않았다(표 6).

피고인 평가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도 혐오 출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597)} = 5.555, p = .004, \eta_p^2 = .019$). 출처가 범죄현장일 때 피고인에 대한 혐오가 가장 높았으며(8.17), 통제조건에서도 7.94로 범죄현장 조건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성 소수자 조건은 7.51로 가장 낮았다(표 7). 사후검정 결과 성 소수자 조건은 범죄현장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피고인에 대한 혐오가 더 낮았으며, 이외에 다른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 소수자 조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정서는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r = .532, p < .001$), 이는 본 연구에서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가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도 혐오 출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597)} = 3.929, p = .020, \eta_p^2 = .013$). 출처가 성 소

표 7. 조건별 피고인에 대한 혐오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8.24 (1.94)	7.80 (1.76)	7.78 (2.12)	7.24 (2.09)	8.30 (1.93)	
지시문 있음	7.76 (2.45)	7.94 (1.88)	7.66 (2.15)	7.36(1.97)	8.34 (1.62)	8.08(1.86)	7.86 (2.01)
합계	8.00 (2.21)	7.87 (1.81)	7.72 (2.13)	7.30 (2.09)	8.32 (1.78)	8.01 (1.94)	7.87 (2.00)
	7.94 (2.02)		7.51 (2.08)		8.17 (1.86)		

주.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 범위: 1(전혀 혐오스럽지 않음)- 10(매우 혐오스러운).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8. 조건별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2.98 (2.36)	3.10 (1.95)	2.98 (1.72)	3.56 (1.82)	2.92 (2.03)	
지시문 있음	3.06 (2.43)	2.74 (1.79)	3.62 (2.36)	3.58 (2.23)	2.92 (1.85)	2.88 (2.14)	3.13 (2.17)
합계	3.02 (2.38)	2.92 (1.87)	3.30 (2.08)	3.57 (2.06)	2.92 (1.93)	2.88 (2.05)	3.10 (2.08)
	2.97 (2.14)		3.44 (2.07)		2.90 (1.99)		

주.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범위: 1(전혀 동정심이 안 드는) - 10(매우 동정심이 드는). 괄호 안은 표준편차

수자인 조건(3.44)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가장 높았으며, 통제조건(2.97)과 범죄현장 조건(2.90)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사후검정 결과 성 소수자 조건이 범죄 현장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았다. 이외에 다른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증거평가

증거평가는 각 쟁점에 대해 검사의 의견과 변호사의 의견을 평가한 것으로서(각 쟁점에 대해 1 ‘검사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 - 10 ‘변호사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 두 개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표 6). 분석 결과 쟁점이 된 증거평가 평균에 대해 혐오의 출처가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였다($F_{(2,597)} = 3.636, p = .027, \eta_p^2 = .012$). 구체적으로 범죄현장 조건(4.06)이 가장 유죄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했고, 성 소수자 조건에서(4.58) 가장 무죄 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하였으며, 두 조건은 사후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추가 무죄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2,597)} = 6.492, p = .011, \eta_p^2 = .011$). 추가 무죄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4.16)이 제시된 경우(4.58)보다 더 유죄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간의 관계: 증거평가의 조절 효과

혐오 정서가 예측 변인으로서 유죄확률 판단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영향은 혐오 정서의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혐오 정서로부터 유죄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 전반적인 증거평가가 조절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혐오 정서의 출처별로 분석하였다(Baron & Kenny, 1986). 혐오 정서와 증거평가는 평균 중심화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1단계는 독립변인인 혐오 정서, 2단계는 조절 변인인 증거평가를 추가하여 혐오 정서와 증거평가, 3단계는 혐오 정서와 증거평가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증거

표 9. 조건별 증거평가 평균

지시문 존부	통제조건		혐오출처:성 소수자		혐오출처:범죄현장		합계 (N=600)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추가 무죄증거 없음	추가 무죄증거 있음	
지시문 없음	4.04 (2.00)	4.59 (2.14)	4.27 (2.03)	4.81 (1.44)	3.84 (2.36)	4.18 (2.11)	4.29 (2.10)
지시문 있음	4.41 (2.03)	4.87 (1.86)	4.46 (1.71)	4.78 (2.23)	3.94 (1.75)	4.28 (2.29)	4.46 (2.00)
합계	4.23 (2.02)	4.73 (2.00)	4.37 (1.87)	4.80 (2.05)	3.89 (2.07)	4.23 (2.19)	4.37 (2.05)
	4.48 (2.02)		4.58 (1.97)		4.06 (2.13)		

주. 1 ‘검사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 - 10 ‘변호사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

표 10. 성 소수자 조건의 혐오 정서와 유죄 확률 간의 관계에서 증거평가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유죄 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R^2	ΔR^2	공차한계	VIF
1	혐오 정서	.396***	.157***	-	1.000	1.000
2	혐오 정서	.194**	.362***	.205***	.834	1.199
	증거평가	-.496***			.834	1.199
3	혐오 정서	.167**	.376***	.014*	.801	1.249
	증거평가	-.490***			.832	1.201
	혐오 정서 × 증거평가	.122*			.942	1.061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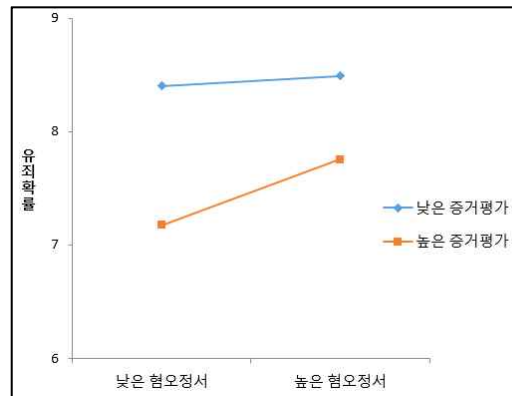
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혐오 정서가 유죄확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혐오 정서와 증거평가의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고($\beta = .122, p = .037$),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 = .014, p = .037$).(표 10)

조절 효과 해석을 위해 Aiken과 동료들(1991)이 제안한 방법으로 조절변수인 증거평가가 0, -1 표준편차, +1 표준편차일 때, 독립변수인 혐오 정서와 종속변수 유죄일 확률의 회귀 식을 추정하여 단순 기울기(simple slope)로 상호작용 도표를 생성하였다(그림 4). 분석 결과, 증거평가가 낮은 경우, 즉 증거평가를 유죄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 기울기(β)는 0.722이었으나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470$). 그러나 증거평가가 높은 경우, 즉 증거를 무죄 방향으로 해석한 경우 기울기(β)는 3.885로 유의하였다($p < .001$). 평균 기울기는 3.174로 역시 유의하였다($p < .01$). 다중 공선성 분석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가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0).

이는 성 소수자 조건에서 증거를 무죄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 혐오 정서가 바로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증거가 유죄방향을 가리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혐오 정서가 유죄 판단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증거평가와 관계없이 혐오의 정도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예측하였다.



주. 낮은 증거평가는 유죄방향, 높은 증거평가는 무죄 방향을 의미함.

그림 4. 성 소수자 조건 내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간의 관계에서 증거평가의 조절 효과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법적 판단

한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정관념 내용 모델(SCM; Fiske et al., 2002)의 기준인 집단의 능력(competence)과 온정성(warmth)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한 결과, 성 소수자의 능력 판단의 평균은 4.35(1.80)로 낮은 편이었으며, 성 소수자의 온정성 판단 평균은 3.68(1.76)로 역시 낮았다(1'낮음' - 10'높음').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정서 반응은 6.89(2.03)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 혐오 정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혐오 정서가 높을수록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요소인 능력, 온정성 평가가 낮았으며(각 $r = -.317^{**}$, $-.377^{**}$)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혐오 정서가 높았다($r = .243^{**}$). 이는 예측한 것처럼, 피고인이 성 소수

자인 조건에서의 혐오 정서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 소수자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능력, 온정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r = -.357^{**}$, $-.435^{**}$).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정서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r = .336^{**}$),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과소하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주목할 것은,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을수록 혐오 정서, 피고인에 대한 혐오 평가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정서가 낮게 나타났으며(각 $r = -.342^{**}$, $-.560^{**}$, $-.186^{**}$), 성 소수자의 능력과 온정성을 높게 보았다는 점이다($r = .235^{**}$, $.349^{**}$). (표 11)

표 11.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과 피고인에 대한 평가 및 정서 간 상관관계 표

	혐오 정서	피고인에 대한 혐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성 소수자의 능력	성 소수자의 온정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혐오 정서						
피고인에 대한 혐오	.532**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342**	-.560**				
성 소수자의 능력	-.317**	-.357**	.235**			
성 소수자의 온정성	-.377**	-.435**	.349**	.565**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243**	.336**	-.186**	-.403**	-.510**	
N	600	600	600	200	200	200
평균	7.38 (2.22)	7.87 (2.00)	3.10 (2.08)	4.35 (1.80)	3.68 (1.76)	6.89 (2.03)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 소수자의 능력, 온정성, 혐오 문항은 성 소수자 조건에만 해당하여 N=200

논 의

본 연구는 범죄현장에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두 유형의 출처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의 속성과 크기, 그리고 정서가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 혐오 정서는 범죄현장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유죄일 확률, 유죄방향의 증거평가 및 형량판단이 동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성 소수자 조건에서 혐오 정서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또한, 성 소수자 조건에서만 혐오 정서가 유죄일 확률 판단을 직접 예측하지 않아, 통제조건에서만 혐오 정서가 유죄확률판단을 직접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범죄현장 조건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지시문의 제시로 인해 유죄일 확률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조건에서는 지시문 제시로 인해 유죄확률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 가설을 일부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소수자 피고인에 대한 혐오는 정적상관을 보임으로써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과소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혐오 정서는 성 소수자가 피고인인 경우보다 범죄현장이 잔인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유죄일 확률과 형량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성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냉담함과 무능력함의 조합이며(Clasusell & Fiske, 2005), 성 소수자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는

범죄행위가 전제하는 도덕적 규범 위반 이외에 사회의 성 도덕적 가치(sexual-moral norm)에 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건 현장에서 유발된 혐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서부터 나오는 혐오 정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혐오 요소가 없는 통제조건에서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각 출처가 의미하는 혐오 정서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혐오 정서는 크게 핵심적 혐오와 도덕적 혐오로 나누어볼 수 있고,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나 범죄현장이 잔인한 경우 모두 범죄로 인한 도덕적 혐오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잔인한 범죄현장은 본 연구에서처럼 사체나 피와 같은 인간의 분비물과 관련된 혐오, 즉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도덕적 혐오보다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즉 진화론적으로 더욱더 핵심적인 혐오가 범죄현장에서부터 비롯되므로 범죄현장에서부터 나오는 혐오가 더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앞서 말한 것처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중 도덕적 혐오는 타인 생명의 존엄을 박탈했다는 것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적 가치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건보다 도덕 혐오가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 그에 대한 동정심이 다른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고정관념 내용 모델에서는 냉담하고 무능력한 집단에 대한 정서는 혐오에 한정하였으나, 외부 집단

에 대한 정서는 하나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Cottrell & Neuberg, 2005). 이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정서를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서와 비교할 때, 단순히 혐오 정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anxiety)은 더 낮고 동정심(pity)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사회의 성 도덕적인 전통규범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도덕적 혐오를 낳을 수 있으나, 이러한 혐오는 본 연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일부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혐오 정서와 동정심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42^{**}$)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잔인한 범죄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정서가 더 높은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 혐오가 성 소수자에 의한 전염 두려움이나 성적인 가치 규범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혐오보다 더 강하며, 성 소수자 조건에서 동정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법적 지시문(judicial instruction)은 피고인의 성격이나 전과, 전문증거(hearsay evidence)와 같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무시하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배심원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시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지시문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Stebly et al., 2006). 혐오 정서의 속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약 정서가 일시적인 속성의 정서(incidental emotion)라면 사법적 지시문의 영향으로 인해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chwarz & Clore, 1983). 본 연구에서는 범죄현장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판단자들이

범행 현장이 범행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시문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 유죄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는 않았고 지시문 존부 변인과 혐오 정서의 출처 변인은 유죄일 확률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 형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혐오 출처 변인의 모든 조건(통제조건, 성 소수자 조건, 범죄현장 조건)에서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 법적 판단인 형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앞선 전제에 의하면 지시문으로써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으므로 모든 조건에서 유발된 혐오 정서가 일시적 정서(incidental emotion)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서의 부적절한 영향을 경고한 지시문의 수용 여부나 정도가 곧바로 정서의 성질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현재 느끼는 정서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라도 인지 요구 특성(Need For Cognition)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지시문으로써 정서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으며(DeSteno et al., 2000), 법적 판단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는 지시문의 방향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Lerner & Tetlock, 1999).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혐오 출처의 조건별로 지시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또한 각기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혐오 정서의 속성(일시적 정서 또는 사건 관련 정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혐오 정서의 출처별로 지시문 존부가 유죄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조건에서만 지시

문의 존부에 따라 유죄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_{(198)} = 2.393, p = .018$). 이 결과는 기존 범죄 내용 외에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범행 방법을 암시하는 범죄현장처럼 추가로 혐오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판단자는 자신의 판단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정서라기보다는 사건 관련 정서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본 연구의 변량분석에서는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인 혐오 요인이 없는 통제 조건에서도 평균 유죄확률이 8.00으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범죄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의 부정적인 성향(문란한 사생활)이 전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⁷⁾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성향에 대한 정보는 다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고민조, 김주용, 2019; Steblay et al.,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 소수자의 성적 사회 규범(sexual-social norm) 위반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적 행동 특성을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켰고 이런 내용이 하나의 혼입 변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도 공히 피고인의 성적 행동 특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 공통된 피고인의 부정적 성향 정보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 모든 조건에서 혐오 정서, 유죄확률, 및 증거평가 유죄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변인에 따른 주 효과만 나올 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경로(직접적인지 혹은 간접적인지)가 혐오의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죄일 확률에 있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와 혐오 출처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역시 전반적으로 유죄일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도 있지만,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 변인 자체가 유죄일 확률에 매우 강력한 주 효과를 나타낸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F_{(1,598)} = 15.318, p < .001, \eta_p^2 = .025$).

그러나 유죄확률 판단과 혐오 정서 간의 관계를 혐오 정서의 출처별로 살펴본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증거평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증거가 무죄 방향으로 해석될 때는 혐오가 높아짐에 따라 유죄확률도 높아졌지만, 증거를 유죄방향으로 평가할 때는 예측 변인인 혐오 정서와 증거 변인인 유죄확률 판단 간의 기울기가 거의 평평한 직선을 보였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성 소수자 조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반응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동 조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과 유죄확률 판단 간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r = -.416^{**}$)가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증거를 유죄방향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높은 혐오 정서가 나타나더라도 이 혐오 정서가 유죄확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동정심으로 인해 억제되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때

7) 공통적인 시나리오에는, 피고인이 세입자로서 6개월간 월세가 밀린 데다가 여자(성 소수자 조건에서는 남자)를 바꿔가며 지내고 늦은 밤에도 소음으로 이웃과 피해자인 집주인의 불만을 샀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나타나는 혐오 정서는 범죄현장에 기인한 혐오 정서와는 달리 곧바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증거평가의 방향이 정서와 법적 판단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법적 판단 시 혐오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특히 사건에 대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정서($r = .243^{**}$) 및 성 소수자의 능력과 온정성에 대한 고정관념($r = -.317^{**}, -.377^{**}$)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 소수자 조건에서 나타난 혐오 정서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성 소수자 조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정한 외집단이 단 하나의 정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정서도 또한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어떤 외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내집단의 특정 가치체계 등을 위협하거나 저하하는 경우에는 혐오 외에 이차적으로 동정심(pity)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Cottrell & Neuberg, 2005; Mackie & Smith, 2016). 즉,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 반응만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동정심도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것에 비해 더 유의미하게 높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과 유사할 수 있는데, 장애인의 장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성적 취향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

근 이런 경향은 달라지고 있으며(Jannin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게 동정심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의 성적 취향도 역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덧붙일 점은 본 연구에서 분노 정서도 혐오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 소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혐오라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분노 정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와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해서 더 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혐오나 분노라는 정서가 오히려 법감정에 부합하고 적절하다는 견해(Burns, 1999)도 있는바, 이러한 전형적인 정서가 사건 판단에 있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상황이나 정도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 없거나 증거능력 없는 법 외적 증거(extra-legal evidence)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며, 이런 증거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은 지양해야 한다(Hastie, 2001). 범죄 현장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오직 그 증명력이 선동적(provocative) 영향에 비해 크다고 인정되는 때만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한 미국 증거법 제 403조⁸⁾도 이러

8)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403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e or more

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37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르면,⁹⁾ 재판장은 법정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 및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증거법과 같이 증거가 부당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고, 재판장 개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편견을 유발하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집단 소속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면 편견이나 부적절한 정서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증거 쟁점이 제시된 페이지에서는 강제 체류 시간을 설정하였고, 기본적인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2개 질문에 오답한 참가자의 데이터는 미리 제외하였으며, 총 600명의 참가자로 조건당 50명의 참가자를 무작

위로 할당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 데이터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 소수자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 소수자의 성적 취향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적시하였다. 그러나 추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성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로부터 나오는 정서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는 성 소수자인 피고인이 유발하는 혐오 정서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범죄현장에서 제시되는 사체, 인체 분비물 등에서 비롯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의 강력한 영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발된 혐오 정서는 사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 없이 곧바로 유죄확률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범죄현장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이처럼 곧바로 유죄확률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적 지시문에 의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재판 실무에서 범죄현장 사진 등의 제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범죄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혐오 외에 범죄현장에 기한 핵심적 혐오 또는 피고인의 성적인 사회 규범 위반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더해진 경우에는 판단자들이 자신의 혐오 정서가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법 외적 증거에 의한 혐오 정서라도 사건 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케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 소수자가 피고인일 때 혐오와 동시에 동정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재판장의 설명)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3.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낮은 능력과 냉담성이라는 고정관념 내용에 속한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 즉 정서적 반응이 혐오에 그치지 않고 동정심이라는 이차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재검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주제, 즉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경로와 그 속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혐오 정서의 본질, 즉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인지 도덕적 혐오(moral disgust)인지에 따라 혐오 정서의 크기와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법적 판단에서 혐오 정서의 역할에 대해 통찰할 계기가 되고, 또한 이 연구로써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두드러졌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민조, 김주용 (2019).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법*, 10(3), 215-235.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_TCAZ000000050224

양형위원회 (2023). 살인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윤인경 (2020. 05. 26). 코로나19: 혐오로 번진 이태원발 집단감염...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803935>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Ask, K., & Pina, A. (2011). On being angry and punitive: How anger alters perception of criminal inten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5), 494-49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odenhausen, G. V., Sheppard, L. A., & Kramer, G. P. (1994). Negative affect and social judgment: The differential impact of anger and sad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45-62.

Bornstein, B. (1998). From compassion to compensation: The effect of injury severity on mock jurors' liability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1477-1502.

Bright, D. A., & Goodman-Delahunty, J. (2004). The influence of gruesome verbal evidence on mock juror verdict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1), 154-166.

Bright, D. A., & Goodman-Delahunty, J. (2006). Gruesome evidence and emotion: anger, blame, and jury decision-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30(2), 183-202.

Burns, R. (1999). *A theory of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pman, H. A., & Anderson, A. K. (2013). Things rank and gross in nature: a review

- and synthesis of moral disgust. *Psychological Bulletin*, 139(2), 300-327.
- Clausell, E., & Fiske, S. T. (2005). When do subgroup parts add up to the stereotypic whole? Mixed stereotype content for gay male subgroups explains overall ratings. *Social Cognition*, 23(2), 161-181.
- Cottrell, C. A., & Neuberg, S. L. (2005).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70-789.
- Curtis, V., & Biran, A. (2001). Dirt, disgust, and disease: Is hygiene in our gene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4(1), 17-31.
- DeSteno, D., Petty, R. E., Wegener, D. T., & Rucker, D. D. (2000). Beyond valence in the perception of likelihood: the role of emotion specific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397-416.
- Douglas, K. S., Lyon, D. R., & Ogloff, J. R. (1997). The impact of graphic photographic evidence on mock jurors' decisions in a murder trial: Probative or prejudicial?. *Law and Human Behavior*, 21(5), 485-501.
- Estrada-Reynolds, V., Schweitzer, K. A., & Nuñez, N. (2016). Emotions in the Courtroom: How Sadness, Fear, Anger, and Disgust Affect Juror's Decisions. *Wyo. L. Rev.*, 16, 343-358.
- Feigenson, N., & Park, J. (2006). Emotions and attribu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and blame: A research review. *Law and Human Behavior*, 30(2), 143-162.
- Fiske, S. T. (2018). Stereotype content: Warmth and competence end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7(2), 67-73.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Goldberg, J. H., Lerner, J. S., & Tetlock, P. E. (1999). Rage and Reason: The Psychology of the Intuitive Prosecut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5-6), 781-795.
- Haidt, J., Rozin, P., McCauley, C., & Imada, S. (1997). Body, psyche, and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gust and morality.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9(1), 107-131.
- Hastie, R. (2001). Emotions in juror's decision making, *Brooklyn Law Review*, 66, 991-1009.
- Herek, G. M., & Capitanio, J. P. (1999). AIDS stigma and sexual prejudi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7), 1130-1147.
- Herek, G. M., & McLemore, K. A. (2013). Sexual prejudi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309-333.
- Horberg, E. J., Oveis, C., Keltner, D., & Cohen, A. B. (2009). Disgust and the moralization of pu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63-976.
- Jannini, E. A., Blanchard, R., Camperio-Ciani, A., & Bancroft, J. (2010). Male homosexuality: Nature or culture?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7(10), 3245-3253.
- Keltner, D., Ellsworth, P., & Edwards, K. (1993). Beyond simple pessimism: Effects of sadness and anger o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40-

- 752.
- Lee, S. W., & Ellsworth, P. C. (2013). Maggots and Morals: Physical Disgust is to Fear as Moral Disgust is to Anger. In K. R., Schere, & J. R. J., Fontaine (Eds.), *Components of Emotional Meaning: A Sourcebook* (pp. 271-280). Oxford University Press.
- Lerner, J. S., & Tetlock, P. E. (1999).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55-275.
- Loewenstein, G., & Lerner, J. (2003). The role of affect in decision making.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619-642.
- Mackie, D. M., & Smith, E. R. (2016).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sychology Press.
- Navarrete, C. D., & Fessler, D. M. (2006). Disease avoidance and ethnocentrism: The effects of disease vulnerability and disgust sensitivity on intergroup attitude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7(4), 270-282.
- Ortony, A., Clore, G.,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zin, P., Haidt, J., & McCauley, C. R. (1999). Disgust: The body and soul emotion.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429-445.
- Salerno, J. M., & Peter-Hagene, L. C. (2013). The Interactive Effect of Anger and Disgust on Moral Outrage and Judgments. *Psychological Science* 24(10), 2069-2078.
- Schwarz, N., & Clore, G. (1983). Mood, misattribution,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523.
- Semmler, C., & Brewer, N. (2002). Effects of mood and emotion on juror processing and judgment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0(4), 423-436.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813-838.
- Sommers, S. R. (2006). On racial diversity and group decision making: identifying multiple effects of racial composition on jury delib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597-612.
- Stebly, N. M., Besirevic, J., Fulero, S. M., & Jimenez-Lorente, B. (1999). The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verdicts: A meta-analytic review. *Law and Human Behavior*, 23(2), 219-235.
- Stebly, N., Hosch, H. M., Culhane, S. E., & McWethy, A. (2006). The impact on juror verdicts of judicial instruction to disregard inadmissible evidence: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30(4), 469-492.
- Tiedens, L., & Linton, S. (2001). Judgment under emotional certainty and uncertainty: The effects of specific emot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973-988.
- Wason, P. C., & Evans, J. S. B. (1974). Dual processes in reasoning? *Cognition*, 3(2), 141-154.
- 논문 투고일 : 2023. 07. 14
1 차 심사일 : 2023. 07. 26
2 차 심사일 : 2023. 08. 18
게재 확정일 : 2023. 10. 27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Disgust Induced by the Crime Scene vs. Sexual Minority Stereotypes

Lee Yoonjung

Ph. D. in psychology and law, Hallym University, South Korea

This study compared the nature of disgust caused by the crime scene with that by the stereotype of the sexual-minority defendant, and compared the effect of each type of disgust on evidence evaluation and legal judgment. A total of 600 participants (300 men, average age of 44.40) were randomly assigned to sources of disgust (crime scene, sexual minorities defendant, control condition), the existence of additional evidence of innocence (o/x), and the existence of judicial directives (o/x). As a result of the study, disgust under the condition of a cruel crime scene with strong physical disgus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exual minority defendant, interpreted the evidence in a more guilty direction, and was more prone to evaluate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It is noteworthy that evidence evaluation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variable between disgust and probability of guilt under conditions where the source of disgust was a sexual minority, but not under control conditions and crime scene condition. It means that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may not be direct when the defendant is a sexual minority.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instruction had a significant inverse effect on the sentence. And simple effect analysis found that presenting judicial instruction lowered probability of guilt only under the control condition. This makes it reasonable to infer that disgust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scene and the defendant can be recognized as integral emotions that are difficult to correct with instructions. Finally, pity for the defendant was significantly higher under the conditions of sexual minority which shows that an emotional response of sympathy may occur in addition to disgust for sexual minorities. After examining the nature of disgust (physical & moral), legal judgment according to the source and degree of disgust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disgust and sympathy for the sexual minority defendant was discussed.

Key words : *disgust, crime scene, sexual minority, legal decision making, pity*

부 록

범죄 사건 시나리오

아래 시나리오 내용 중 밑줄 친부분은 혐오 출처 변인 중 범죄현장 조건을 조작한 내용이며, 괄호 안의 이탤릭체 부분은 성 소수자 조건으로 조작된 내용이다.

실제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읽어주십시오.

(피고인 A(38세, 남)는 동성애자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남자임이 확실하지만, 가끔 진한 화장을 하고 가죽 미니스커트 같은 여자 옷을 입고 다닌다.)

피고인 A(38세, 남)는 피해자 B(남, 50세)가 소유하고 있는 OO시 OO구 OO동 4층짜리 건물에 3년째 세 들어 살고 있었다. A는 그 건물에 세를 사는 동안 여자들을(남자들을) 바꿔가며 밤낮으로 집에 들였고, 옆 방에 사는 C는 A의 행실과 옆집의 은밀한 소음이 너무 거슬려 집주인 B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

사건 발생 보름 전인 2019. 7. 7. 오전 11시 경 집주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이웃의 불만을 전달하려고 A방에 찾아가 보았는데, 문이 열려 있어 내부가 보였다. 방에는 A와 젊은 여성(남성)이 팬티까지 모두 벗은 채로 나란히 누워있었으며, 바닥에는 옷가지, 내의, 그리고 사용된 여러 개의 콘돔이 널브러져 있었다.

A는 사건 이전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여 이미 6개월째 연체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면을 보다 못한 집주인 B는 집관리와 행실도 엉망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하였는데,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들은 이전에도 집주인 B가 큰 소리를 내며 A에게 화를 내고 꾸짖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

2019년 7월 22일 오후 4시쯤 피고인 A가 월세 일부를 내겠다며 집주인 B가 기거하는 4층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밀린 월세 6개월분 중 1개월만을 내려고 한 A에게 집주인 B는 월세를 다 갚아도 이런 행실로는 더 이곳에서 살지 못한다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 질렀다. 피고인 A는 이에 격분하여 집주인 B를 쓰러뜨리고 부엌 식탁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등을 찔러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19대원이 사건 장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사체 썩는 냄새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집중된 자상이 있었고, 마룻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여름인 7월 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사체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 안방의 장롱 서랍이 열려져 뒤진 흔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2천 만원 가량이 도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결과 피해자 B는 과다출혈로 인

이윤정 /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해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7월 22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피고인 A 변호인의 무죄 항변을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피고인 A는 비록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월세 일부를 내려고 하였으며, 달리 이사할 곳도, 금전적 여유도 없는 피고인이 그나마 관대한 집주인인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대낮에 당당하게 CCTV가 현관에 있는 피해자 거처로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범행 현장에는 낡은 축구화 족적이 있었으나, 지인들은 피고인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왼손잡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검의의 소견이나, 피고인은 어린 시절에는 양손잡이였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오른손잡이다.